

검 토 보 고

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11월 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기금 운용·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누락된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도록 함.(안제3조)
- 나.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총무국장, 사회산업국장,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장, 시의원 3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함.(안제4조)
- 다.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,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,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,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함. 또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.(안제9조)

라.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는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,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며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.(안제12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누락된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의 의회제출사항을 추가하고 「기금운용 심의위원회」의 구성에 대한 사항중 시의회의 의원수를 1인에서 3인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면 개정안임.
- 안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시의원의 수를 당초 1인에서 3인으로 확대한 것은 노인복지 업무의 중요성과 의회의 기금에 대한 통제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
- 안제9조와 안제12조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지며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체계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